

## 닭·오리·계란 이력제

Q. 2020년 1월 1일부터 닭·오리·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는데 농가에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?

A. 닭·오리·계란 이력제는 닭·오리의 사육과 닭·오리고기, 계란의 유통·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·관리하고,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회수와 유통차단이 가능한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1. 육계 농장 :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(미부여 농장)

- 월 1회, 매월 1~5일 사이 사육현황 신고(계열화업체에서 신고 대행 가능)
- 수입신고(종축검정기관)
- 입란신고(부화장에서 신고)
- 이동(거래)신고(이동·거래 발생 시)

2. 산란계 농장 :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(미부여 농장)

- 월 1회, 매월 1~5일 사이 사육현황 신고(계열화업체에서 신고 대행 가능)
- 원란 정보 제공(원란 입고표, 거래명세서 : 농장식별번호, 산란일자 및 종량별 개수 기재)

3. 식용란선별포장업 : 이력관리시스템 회원가입(필수)

- 출하농장 농장식별번호 확인
- 이력번호 발급 신청(농장·산란일자별)
- 이력번호 표시(최소포장단위)
- 선별포장실적 전산신고

※관련 문의 사항이나 농장식별번호 신청은 이력지원실(1577-2633)로 연락해주시십시오.

출처 : 축산물품질평가원

※ 본란은 독자분들께 사양, 유통, 질병, 시설 등 전반적인 양계에 관한 질문을 받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답변해 드리는 코너입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.  
ch-spirow@hanmail.net(장성영 기자), wg1167@hanmail.net(임설희 기자)